

의안 번호	제3666호
----------	--------

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9월 3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9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9월 19일

2. 제안이유

-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출연(출자)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- 나. 출자·출연의 필요성
- 지방세·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한 연구기관
 - ※ 설립 근거 :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 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전 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.0*를 발전기금으로 출연
 - * 2025년 출연 비율 개정 : (개정 전) 1만분의1.2 → (개정 후) 1만분의1.0
- 다. 출자·출연금액
- 출연 예정금액 : 40,327천원

라. 주요사업
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 해석 정보시스템 운영
- 지방세수 확충과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, 학술행사 등의 사업 수행
- 지방세제 개편 등 정책 연구

마. 기대효과

- 지방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